

# 베트남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와 그 전망

정 순 민

(노동부 주베트남 노무관)

## ■ 베트남의 경제·노동정세 개관

### 거시경제의 개황

베트남 경제는 전후 10년간 크게 부진, '86년도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이 머이'(경제 쇄신) 정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로 '90년 초 연평균 9%대의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급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미국과의 통상 관계 지연 및 동남아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98~'99 양년에는 5%대의 저성장을 보였으나 2000년부터 6.7%로 반전, 2002년까지 평균 7%선의 성장세로 호전됨에 따라 중앙당은 2003년도 GDP 성장 목표를 7.0~7.5%로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고도성장이 가능한데는 FDI의 활성화, 높은 산업생산성 및 수출증대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이고 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2003년도에도 수출부진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표 1]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불, %)

구 분	2001(실적)	2002(목표)	2002(실적)	2003목표(미확정)
GDP성장률	6.8	7.0~7.3	7.04	7.0~7.5
수 출 액	151(4.8%)	170(10~13%)	165(10%)	170(7.0~8.0%)
수 입 액	160(2.3%)	175(10%)	119.5(14.2%)	188(7.5%)
무 역 수 지	-9	-5	-27	-18
외국인투자	37.86(3,046건)	20	13.33(669건)	23(-)
산업생산성	14.5	14.0	14.5	10.5

자료: 베트남Economic News

### 노동경제의 동향

베트남 인구는 2001년 기준 7,870만 명이며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 인구는 3,900만명으로 기록되고 취업인구는 3,760만명으로써 매년 50~60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근 5년간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숙련 근로자의 비율이 15% 내외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임금수준을 보면, 2000년도 도시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20천동/ \$37 상당(민영기업 499천, 국영기업 518천, 외자기업 757천) 정도이다. 특히 베트남 임금정책은 내외국기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01~02년의 최저임금이 월 210천동이며, 외자기업은 지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하노이, 호치민시: 월626천동/ \$45상당~산악지역: 월417천동/ \$25상당)이 이채롭다.

[표 2] 베트남의 주요 노동경제 지표

(단위: 천명, %)

구 분	`96	`97	`98	`99	2000
총 인 구	65,906	74,314	75,454	76,618	77,686
경 제 활 동 인 구	35,866	36,296	37,407	37,784	38,643
숙련·유자격 기능자	-	3,103	3,500	3,816	4,515
취 업 인 구	-	34,352	34,801	35,680	36,205
실 업 륜	5.88	6.01	6.85	6.74	6.42
평균 임금 (천 동)	401.5	470.4	417.0	544.4	588.2

자료: 96~`00 노동사회연감

## ■ 2002년도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사회주의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다. 특히 2002년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 문제 해결을 위해 1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33만개는 국가고용안정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도시지역의 실업률을 6.2%로 낮추며 농촌지역 70여만명의 근로자를 끌어내어 제조·건설부문에 18만~20만명, 서비스 부문에 32만~35만명을 흡수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해외에 35천~40천명의 인력 송출을 통하여 외화가득률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100만명의 직업훈련 실시목표 아래 장기훈련에 12만 6천명, 단기훈련에 85만 6천명을 구분·양성하면서 15개 직업훈련 학교에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다.

또한, 임금·급여 정책에 있어서는 국영기업 종사자의 급여(월기본급, 210천동)의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지급 상황을 연구하고 생산부문, 최저 임금 및 급여관련 정책의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 미-베 무역협정의 발효

베트남은 1955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에도 불구하고, 미통상법 제402조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MFN)를 받지 못하다가 9차례에 걸친 양국 실무회담 등 우여곡절 끝에 무역협정의 서명, 미 의회에 상정, 상하양원 전체 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01.12.10자 발효되었고 2002년은 동 무역협정 시행의 첫 해가 된 셈이다.

동 무역협정의 주된 내용은, 상품교역, 지적재산권, 서비스 시장접근, 투자촉진 및 투명성 규정 등 총 6개장에 걸쳐 구분되며, 주로 무역·투자 장벽이 높은 베트남 시장의 개방범위와 추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동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상품·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관세가 타국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고 시장개방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 역시 폭넓게 제·개정토록 되어 있다.

미-베 무역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베트남의 시장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가져와 베트남을 대미수출의 우회기지로 활용할 수 있어 아국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에 메리트를 주게 됐다. 실제로 '02년 한 해동안 90여개 아국기업이 베트남에 신규로 투자 진출했다.(2002년 8월말 현재 자영업 260개를 제외하고 대표사무소, 합작·단독투자 및 임의진출 형태로 약 450개의 아국기업이 기 진출해 있음)

### 노동법의 대폭개정

베트남 정부는 '94.6.23 제정한 '베트

남 사회주의 공화국 노동법<sup>1)</sup>을 8년만인 '02.4.12자로 총 195개 조문 중 물경 55개 조문을, 그것도 큰 논란도 없이<sup>1)</sup> 대폭 개정·공포하였고 2003.1.1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동 개정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노동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은 물론 2개월 분의 임금을 위자료로 별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1~3년 기간의 근로계약은 1회에 한하여 자동 갱신되며 그 이후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으로 되는 등 사용자의 인사권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또한, 주 휴일중 '공휴일'에 연장 근로시킬 경우 수당의 가산지급율이 종전의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으며, 노조결성(전 사업장 노조설립 의무화)에 사용자의 조력 의무 조항이 추가되어 그 이행 여부를 정부와 노동총연맹<sup>2)</sup>이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것 등 자본제 사회의 노동법 정신과 상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

1) 비공개리에 논의·개정 되었고, 외자기업은 개정 결과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2) 헌법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법안의 국회 제출권이 있고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으로 각료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치적 위상이 높다.

## ■ 2003년도 노동시장의 전망

### 개정노동법의 발효와 고용효과 저조

새 해의 시작과 동시에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근로자의 임면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해고조항과 근로계약 관련 규정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 나라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고 본다.

FDI의 많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입증대를 통하여 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노동법 개정의 여파가 자칫 외국인투자의 투자를 꺾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제조업 부문의 신규투자가 현저히 줄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노동조합이 비록 친정부적이고 대 사용자 협력적 관계이지만 정부가 노동입법·정책수립에 노총·노련<sup>3)</sup>과 협의를 하며 기업의 노조결성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노조의 위상을 격상시켜 준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

3) 노총산하 61개지역 노동연맹

## 국영기업 급여인상과 과급효과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베트남의 '공무원(국영기업 종사자 포함)의 봉급(기본급) 조정현안'이 올 해 안에 월 210천동에서 월 300천동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미 이에 대한 일반적 컨센서스가 형성됐고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봉급인상에 소요될 추가 재원을 정부예산의 어느 부문에서 삭감하여 충당할 것이냐에 있으며 기본급은, 각종 수당 등 부가급의 산정기초 단위이므로 개인별 실 수령액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임금 10천동 인상시 1.5~1.6 조 동의 예산 뒷받침이 필요).

또한, 국내·외기업간, 도·농간 차등화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베트남의 임금정책에 비추어, 외국투자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덩달아 인상되지 않을까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 진출기업 증가와 노사관계 불안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2순위 투자 대상국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 중국 등에 이어 7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4순위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아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두드러져 2002.1~11월 사이 총 112건 2억 1천 5십만불이 투자되어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볼 때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02. 상반기 실적은 한국이 1위)하고 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현지 근로자를 다수 채용(2002년말 현재 150천명의 고용창출)함에 따라 노사간 마찰도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99~01 사이 아국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99년 2건, '00년 5건, '01년 9건으로 점증하는 추세를 보여 오다가 '02년에는 17건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 평가 및 제언

### 한-베트남의 관계설정 등

지난 해로 수교 10주년 맞이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른바 '21세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임을 입증이라도 하듯 양국간 교역량이 증대되고 대 베트남 투자열기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베트남은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도 수출하는, 지구상에서 흔치 않은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으로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베트남과 깊은 인연을 맺어 왔기 오늘날 물질·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여기서 올 해의 베트남 경제를 전망해 보면, 공산품 위주의 내수확대 속에 디플레 경기를 탈출, 인플레이 기조로 전환되고 농·임산품의 생산 증가와 제조업생산이 호조를 띠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수요부진과 경쟁력의 약화 및 원유·쌀 등 국제가격의 불안 등 세계경제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하여 신규 FDI유치가 부진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난 2년간 세계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베트남의 경제는 그 영향권 안에 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투자진출시 유의할 점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을 피하는 아국기업으로서의 노동집약업종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대만기업과 불가피한 경쟁관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동종의 아국 기업과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분야의 다변화와 투자지역의 분산화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치민시 일원과 섬유·봉제, 가죽·신발 업종 일변도를 지양하고 저렴한 임대료,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중소 도시를 찾고 IT산업 등의 진출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투자자로서는 베트남의 시장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되, '원·부자재나 내수시장'

때문이 아닌 '값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보고 들어간다고 볼 때, 파견할 관리자의 우선 순위를,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파는 기술자'보다는 '사람을 잘 다루고 부릴 줄 아는 전문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결국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